

칠성 호반써밋 하이브파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임차공급 신청 시 유의 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견본주택 홈페이지 운영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 운영 및 사전예약 관리를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임차인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임차인 포함) 서류 심사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계약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접수 및 방문계약 체결을 계획 중이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됨.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측정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발열 및 기타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청약 접수, 당첨자 서류접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및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이 주택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 터 10년)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임차인 모집일(2021.12.17.)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명의 청약 불가)만 청약신청할 수 있음.
- 최초 일반공급 신청 시(청약 신청분) 각 주택형별 배정물량의 20%는 해당 주택건설권역(대구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80%는 전국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함.(우선 공급 청약 당첨자의 정당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본 상 대구광역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람.)
- 당해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함.
- 당해 주택의 청약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약신청 시간은 2021.12.20.(월) 09:00 ~ 2021.12.21.(화) 17:00까지 외에는 불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야 함.
- 반드시 임차인 모집공고의 신청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청약 당첨자 및 계약고객만 방문 가능)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모집공고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공급신청 해야 함.
- 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사업자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되며,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으로 진행됨.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의거 임차인 모집승인 대상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 관리 의무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도 청약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계약금 및 중도금)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사용검사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등기 예정임.
- 당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는 불가함(공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향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당해 주택의 부동산에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함.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 회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음. 사용검사 이후 주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 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입주 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 또는 전대인은 퇴거하여야 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현장수납(건본주택) 하지 않으니 지정된 납부일에 무통장(온라인) 입금하고 계약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기 바라며, 임대사업자는 수납 관련하여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선납금액은(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음. 지정된 계좌 이외에 현장수납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관리주체가 전대 확인 및 건물 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 당해 주택은 주택형 구분 없이 1인 1건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름.

1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12 규정에 의거 대구북구청 건축주택과 - 60977호(2021.12.15.)로 임대주택공급 신고 필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725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9층~45층 3개동 총 4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단위: m², 세대수)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입주예정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민간임대 아파트	84A	84.9708	31.3547	116.3255	59.1092	175.4347	84
	84B	84.9828	32.1681	117.1509	59.1177	176.2686	82
	84C	84.9829	32.3725	117.3554	59.1177	176.4731	84
	84D	84.9928	32.0868	117.0796	59.1246	176.2042	69
	84E	84.9720	31.0687	116.0407	59.1101	175.1508	71
	84F	84.9907	32.0831	117.0738	59.1231	176.1969	56
	계						446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음.(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임.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

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홍보물 등으로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한 후 청약 신청해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사용검사 시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어 별도 표기하지 않음.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차인은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들의 운영권 및 수익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의 권리임을 인정하며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음.
- 상기 면적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으로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임대보증금 및 납입조건

■ 임대 조건

(단위: 원)

주택형	해당동	층별 구분	공급 세대수	임대보증금	계약금(10%)		중도금(49%)				잔금(41%)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1개월 이내)	1회 (2022.10.13)	2회 (2023.09.13)	3회 (2024.08.13)	4회 (2025.04.14)	입주지정일 (2026.01)
84A	101동 3호 102동 3호	41-45층	8	698,700,000	10,000,000	59,870,000	90,831,000	83,844,000	83,844,000	83,844,000	286,467,000
		31-40층	20	695,300,000	10,000,000	59,530,000	90,389,000	83,436,000	83,436,000	83,436,000	285,073,000
		21-30층	18	691,800,000	10,000,000	59,180,000	89,934,000	83,016,000	83,016,000	83,016,000	283,638,000
		10-20층	22	684,800,000	10,000,000	58,480,000	89,024,000	82,176,000	82,176,000	82,176,000	280,768,000
		9층	2	677,800,000	10,000,000	57,780,000	88,114,000	81,336,000	81,336,000	81,336,000	277,898,000
		8층	2	670,800,000	10,000,000	57,080,000	87,204,000	80,496,000	80,496,000	80,496,000	275,028,000
		7층	2	663,800,000	10,000,000	56,380,000	86,294,000	79,656,000	79,656,000	79,656,000	272,158,000
		6층	2	656,800,000	10,000,000	55,680,000	85,384,000	78,816,000	78,816,000	78,816,000	269,288,000
		5층	2	649,800,000	10,000,000	54,980,000	84,474,000	77,976,000	77,976,000	77,976,000	266,418,000
		4층	2	642,800,000	10,000,000	54,280,000	83,564,000	77,136,000	77,136,000	77,136,000	263,548,000
84B	101동 2호 102동 4호	41-45층	8	647,400,000	10,000,000	54,740,000	84,162,000	77,688,000	77,688,000	77,688,000	265,434,000
		31-40층	20	644,200,000	10,000,000	54,420,000	83,746,000	77,304,000	77,304,000	77,304,000	264,122,000
		21-30층	18	640,900,000	10,000,000	54,090,000	83,317,000	76,908,000	76,908,000	76,908,000	262,769,000
		10-20층	22	634,500,000	10,000,000	53,450,000	82,485,000	76,140,000	76,140,000	76,140,000	260,145,000
		9층	2	628,000,000	10,000,000	52,800,000	81,640,000	75,360,000	75,360,000	75,360,000	257,480,000
		8층	2	621,500,000	10,000,000	52,150,000	80,795,000	74,580,000	74,580,000	74,580,000	254,815,000
		7층	2	615,000,000	10,000,000	51,500,000	79,95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52,150,000
		6층	2	608,600,000	10,000,000	50,860,000	79,118,000	73,032,000	73,032,000	73,032,000	249,526,000
		5층	2	602,100,000	10,000,000	50,210,000	78,273,000	72,252,000	72,252,000	72,252,000	246,861,000
		4층	2	595,600,000	10,000,000	49,560,000	77,428,000	71,472,000	71,472,000	71,472,000	244,196,000
		3층	2	589,100,000	10,000,000	48,910,000	76,583,000	70,692,000	70,692,000	70,692,000	241,531,000

84C	101동 4호 102동 2호	41-45층	8	697,900,000	10,000,000	59,790,000	90,727,000	83,748,000	83,748,000	83,748,000	286,139,000
		31-40층	20	694,400,000	10,000,000	59,440,000	90,272,000	83,328,000	83,328,000	83,328,000	284,704,000
		21-30층	18	690,900,000	10,000,000	59,090,000	89,817,000	82,908,000	82,908,000	82,908,000	283,269,000
		10-20층	22	683,900,000	10,000,000	58,390,000	88,907,000	82,068,000	82,068,000	82,068,000	280,399,000
		9층	2	676,900,000	10,000,000	57,690,000	87,997,000	81,228,000	81,228,000	81,228,000	277,529,000
		8층	2	670,000,000	10,000,000	57,000,000	87,1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274,700,000
		7층	2	663,000,000	10,000,000	56,300,000	86,190,000	79,560,000	79,560,000	79,560,000	271,830,000
		6층	2	656,000,000	10,000,000	55,600,000	85,280,000	78,720,000	78,720,000	78,720,000	268,960,000
		5층	2	649,000,000	10,000,000	54,900,000	84,370,000	77,880,000	77,880,000	77,880,000	266,090,000
		4층	2	642,000,000	10,000,000	54,200,000	83,460,000	77,040,000	77,040,000	77,040,000	263,220,000
		3층	2	635,100,000	10,000,000	53,510,000	82,563,000	76,212,000	76,212,000	76,212,000	260,391,000
		2층	2	628,100,000	10,000,000	52,810,000	81,653,000	75,372,000	75,372,000	257,521,000	
84D	101동 1호 102동 5호	31-38층	15	609,600,000	10,000,000	50,960,000	79,248,000	73,152,000	73,152,000	73,152,000	249,936,000
		21-30층	18	606,600,000	10,000,000	50,660,000	78,858,000	72,792,000	72,792,000	72,792,000	248,706,000
		10-20층	22	600,400,000	10,000,000	50,040,000	78,052,000	72,048,000	72,048,000	72,048,000	246,164,000
		9층	2	594,300,000	10,000,000	49,430,000	77,259,000	71,316,000	71,316,000	71,316,000	243,663,000
		8층	2	588,200,000	10,000,000	48,820,000	76,466,000	70,584,000	70,584,000	70,584,000	241,162,000
		7층	2	582,100,000	10,000,000	48,210,000	75,673,000	69,852,000	69,852,000	69,852,000	238,661,000
		6층	2	575,900,000	10,000,000	47,590,000	74,867,000	69,108,000	69,108,000	69,108,000	236,119,000
		5층	2	569,800,000	10,000,000	46,980,000	74,074,000	68,376,000	68,376,000	68,376,000	233,618,000
		4층	2	563,700,000	10,000,000	46,370,000	73,281,000	67,644,000	67,644,000	67,644,000	231,117,000
		3층	2	557,500,000	10,000,000	45,750,000	72,475,000	66,900,000	66,900,000	228,575,000	
84E	101동 5호 102동 1호	31-38층	15	693,600,000	10,000,000	59,360,000	90,168,000	83,232,000	83,232,000	83,232,000	284,376,000
		21-30층	18	690,100,000	10,000,000	59,010,000	89,713,000	82,812,000	82,812,000	82,812,000	282,941,000
		10-20층	22	683,100,000	10,000,000	58,310,000	88,803,000	81,972,000	81,972,000	81,972,000	280,071,000
		9층	2	676,100,000	10,000,000	57,610,000	87,893,000	81,132,000	81,132,000	81,132,000	277,201,000
		8층	2	669,200,000	10,000,000	56,920,000	86,996,000	80,304,000	80,304,000	80,304,000	274,372,000
		7층	2	662,200,000	10,000,000	56,220,000	86,086,000	79,464,000	79,464,000	79,464,000	271,502,000
		6층	2	655,200,000	10,000,000	55,520,000	85,176,000	78,624,000	78,624,000	78,624,000	268,632,000
		5층	2	648,200,000	10,000,000	54,820,000	84,266,000	77,784,000	77,784,000	77,784,000	265,762,000
		4층	2	641,300,000	10,000,000	54,130,000	83,369,000	76,956,000	76,956,000	76,956,000	262,933,000
		3층	2	634,300,000	10,000,000	53,430,000	82,459,000	76,116,000	76,116,000	76,116,000	260,063,000
		2층	2	627,300,000	10,000,000	52,730,000	81,549,000	75,276,000	75,276,000	257,193,000	
84F	103동 1,2호	21-29층	18	696,200,000	10,000,000	59,620,000	90,506,000	83,544,000	83,544,000	83,544,000	285,442,000
		10-20층	22	689,200,000	10,000,000	58,920,000	89,596,000	82,704,000	82,704,000	82,704,000	282,572,000
		9층	2	682,100,000	10,000,000	58,210,000	88,673,000	81,852,000	81,852,000	81,852,000	279,661,000
		8층	2	675,100,000	10,000,000	57,510,000	87,763,000	81,012,000	81,012,000	81,012,000	276,791,000
		7층	2	668,100,000	10,000,000	56,810,000	86,853,000	80,172,000	80,172,000	80,172,000	273,921,000
		6층	2	661,000,000	10,000,000	56,100,000	85,930,000	79,320,000	79,320,000	79,320,000	271,010,000
		5층	2	654,000,000	10,000,000	55,400,000	85,020,000	78,480,000	78,480,000	78,480,000	268,140,000
		4층	2	647,000,000	10,000,000	54,700,000	84,110,000	77,640,000	77,640,000	77,640,000	265,270,000
		3층	2	639,900,000	10,000,000	53,990,000	83,187,000	76,788,000	76,788,000	76,788,000	262,359,000
		2층	2	632,900,000	10,000,000	53,290,000	82,277,000	75,948,000	75,948,000	75,948,000	259,489,000

* 임대의무기간(10년) 종료 후 분양전환시 분양가격 및 방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여 시행하며, 거주중인 임차인은 우선분양전환 권리가 없음.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주택별 임대조건은 층별, 향별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으로 향후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임대조건(임대보증금)은 홈페이지 또는 카탈로그, 인쇄물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상기 임대조건은 기본시설(제공품목) 및 발코니 확장 추가시설(샤시는 기본시설임)도 포함되어 있음. 제공품목은 홈페이지 등 참고하여야 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 증액에 따른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요구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함.
- 입주 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예치시킬 수 있음(단, 입주 시 1회 납부).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및 오피스텔은 상기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별도 분양하는 시설임.
- 상기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최초 임차인 모집일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이 선행되어야하며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아래표의 부담 비율로 부담 납부함.(단,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며 그 이후는 아래의 표와 같이 매년 재산정한 수수료에 대해 임차인이 25% 부담함).
- 상기 임대보증금은 사용검사 후 임대기간동안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증에 가입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상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임대계약기간
보증대상	임대보증금 전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금액)
보증 수수료율	보증기관의 보증 수수료율에 의함
보증수수료	보증금 × 보증수수료 율 × 보증기간(임대사업자가 75% 부담, 임차인이 25% 부담하며, 매년 보증수수료를 재산정함)
납부방법	월 관리비 납부시 관리비와 함께 포함하여 납부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봄.

3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최초 임차인 모집일(2021.12.17.)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시간은 2021.12.20.(월) 09:00 ~ 2021.12.21.(화) 17:00까지 가능하고 17:00 이후에는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은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휴대폰 인증이 필수이므로 휴대폰 명의는 반드시 청약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 본인(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및 세대원 개별 공급신청 가능하며, 상기 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 주택형 구분 없이 1인 1건에 한하여 공급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거주지, 신청 자격 미달 등)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최초 임차인 모집일은 공급자격조건(거주지 등)의 판단 기준임. · 상기 청약 신청 마감시간은 청약 신청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중이더라도 신청이 완료되지 않아 17:00이 경과할 경우 청약이 정상적으로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안내

구분	청약신청 절차 안내
이용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 접속 ▶ 청약신청 ▶ 모집공고 확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 ▶ 본인 인증 ▶ 청약신청 페이지 작성(주택형, 거주지역, 인적사항 등) ▶ 청약접수 결과 확인 ▶ 청약완료
청약접수 확인 방법	-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 청약신청확인 메뉴에서 확인

4 신청일정, 장소 및 신청 방법

신청 일시	신청 장소	신청 방법
2021.12.20.(월) 09:00 ~ 2021.12.21.(화) 17:00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청약신청은 지정된 접수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건본주택 위치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83 칠성 호반써밋 하이브파크 건본주택 (문의전화 : 1522-4994)

5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우선공급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공급 세대 중 각 타입별 20% 범위내에서 대구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됨. - 본 주택의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으로 추첨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제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함에 따라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인당 1건 청약을 원칙으로 1인당 2건 이상 중복청약 할 경우 청약자격 및 당첨사실은 무효처리됨.
일반공급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 당첨자 선정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정함. - 본 주택의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으로 추첨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제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함에 따라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인당 1건 청약을 원칙으로 1인당 2건 이상 중복청약 할 경우 청약자격 및 당첨사실은 무효처리됨.

※ 당첨자 추첨 및 발표 시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안내**

구분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발표	계약 체결
우선공급 (대구광역시)	2021.12.22.(수), 13:00 이후 홈페이지(http://hobansummit-cs.co.kr)	일시 : 2021.12.26.(일) ~ 2021.12.28.(화), 3일간 / 10:00~16:00 장소 : 칠성 호반써밋 하이브파크 견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83)
일반공급 (전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동별 또는 타입별로 계약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무통장 입금시 유의사항
우리은행	1005-304-107551	(주)하나자산신탁	동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음.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란에 반드시 동, 호수, 이름순으로 기재요망 (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1010101홍길동)

- 본 임대주택의 건본주택에서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상기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시 당첨자 효력이 상실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임대보증금의 납부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해당일에 상기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됨. 이 경우 연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함.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계약 시 기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번호 포함, 세대원 포함, 세대원 구성사유 포함) 1통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용) 1통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용도:아파트 계약용) 1통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본인 계약 시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계약 위임용) 1통, 위임장 1통(계약장소 비치,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임차인 모집일(2021.12.17)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반드시 "본인 전체 주민등록번호"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신청 접수된 증명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조건 등

- 당첨자로 선정되었어도 계약 시 서류 검토에서 부적격(거주지, 신청 자격 미달 등)으로 판명이 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됨.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공급 신청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 및 타인명의로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및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임대사업자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함.
- 당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은 취소 또는 해지되고,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환수 조치를 유념하시기 바람.

■ 임차인 대출안내

- 본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대출알선의 의무가 없음.
- 임대사업자가 향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경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임차인은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전세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대사업자가 향후 중도금 대출 알선 시 중도금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중도금 후불제 대출 약정세대에 한하여 입주지정 최초 개시일 전일 까지 임대사업자가 부담함).
- 임차인은 중도금 후불제 혜택이 적용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후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해지)일 즉시 임대사업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액(이하 "대납이자액"이라 한다.)을 변제 상환 하여야 하며, 해제(해지)되지 않은 경우 잔금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금융기관·임대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개인 신용 및 조건에 따라 대출 알선 조건의 변경 또는 대출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바람.
- 임차인은 중도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등급이 다소 변경(하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봄.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당해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 가입대상임.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단, 사용검사 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액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가 납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관리비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함.
-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함.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임대주택 매각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허가)

■ 발코니 확장

- 본 임대주택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샷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함.(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에 입주자사전방문을 2일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에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6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입주지정기간)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지연 또는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관리비, 연체료 등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키즈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 GX,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 시설) 등

8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 당첨, 입주, 관리 등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

- 되었으며, 임대사업자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대지지분은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 확정측량 진행하여 등기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별도분양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면적 증감의 경우에도 대지지분의 변동은 없음.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본 공사 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임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개조하거나 파손한 시설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부담 및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을 참조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시점에 따라 향후 임대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입주 시 잔금 등의 완납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사용검사 후 입주 시 보존등기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입주자는 세대원 전출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코로나19 등 유사 감염병, 하수처리시설 증설 지연등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지하에 문화재 및 지하매설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이 발견되었을 시 인허가 과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일정, 시공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임대사업자가 설치해주고 주택임대관리업자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의 관리운영계획수립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입주 후 운영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임대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임대사업자가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임대사업자 또는 시공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임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구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타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재활용품 보관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난통풍구),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남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인근세대에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지 북측 보행자도로 및 서측, 남측 보행자 통로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실외기실(장비) 및 환기구가 설치됨으로 저층 및 일부세대는 해당부위 통행시 미관/조망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인지·수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야간 조명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평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청약당첨자 및 계약고객만 방문 가능)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및 조망권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인근에 일반도로가 접하여 입주 후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된 공개공지와 보도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없으며, 대지 내 설치된 보도의 경우 유지관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능위주설계대상물로서 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등 설치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대구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

구 할 수 없음.

- 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 시공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 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 시설, 사인물, 문주, 담장, 방음벽,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 입면계획, 차수판,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 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통신 배수맨홀 등의 위치 및 배수구조물 등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임대사업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 및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견본주택 오픈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후 홈페이지 및 견 본주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계 약을 해야 함.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서 사용된 조감도 및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 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홍보물과 상이함에 따른 어떠한 법적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실내가구,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임차인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인근 사업지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음.
- 공급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9 설계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담보준속기간 및 하자보수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되며 하자의 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함.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보수신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청구 할 수 있으며, 하자 발생부위 보수 후 마감처리는 사용승인도서(실내재료마감표)에 따름.

■ 견본주택

- 본 사업의 견본주택 및 각종홍보물은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는 84A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견본주택 내 안내자료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임대사업자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실외기실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준공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 전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므로 기본형 세대 별도 선택이 불가함을 인지하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음.

■ 단지 외부여건

- 유치원생-9권역(북구권) 내 분산 배치 가능.
- 초등학교-통학구역은 칠성초이며, 학교시설 부족으로 유입학생을 적정 배치할 수 없음. 단, 칠성초 증축을 통해 학교시설(일반교실 3실, 특별교실 2실 및 부대 시설)이 적기 확보될 경우 유입학생 적정 배치가능. 필요 학교시설 규모는 향후 추가 개발사업 및 학생배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유입학생 적정배치를 위하여 "대구칠성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비 기부채납 협약(2021.04.30.체결)"에 따라 기부채납금은 납부 완료되었음.)
- 중학생-6학교군(북구권)에 분산 배치 가능함.
- 고등학생-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 배치 가능함.
- 본 아파트 주변 교육시설에 대한 배치 및 신설계획 등은 관할관청의 판단 및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할관청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학교설립 및 학군/배치계획 등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조망, 일조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점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

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남, 동서측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외부의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 동서측의 보행자 통로는 준공 전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될 예정이며, 입주민 뿐 아니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공중의 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소방관 진입창 계획에 따라 위치는 소방차에서 소방활동이 가능한 위치로 계획되어야 하는 바, 세대에 설치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창호의 형태, 난간의 재질 등이 달리 시공되며, 추가 부착물(표식 등)로 인한 조망권 및 일조권이 저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본 아파트 단지 외 북측에 8M 보행전용도로가 지정되어 있으며, 북측 공동주택(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아파트)과 인접되어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및 시공회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일조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 내 인접 동 및 인접세대, 해당 사업지 인근 고층건물, 주변단지의 신축 등에 의해 각 세대별 층수와 향에 따라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공개공지, 휴게공간, 부대복리시설, DA, 실외기실,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조망권, 환경권, 소음/진동,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견본주택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진입가능 높이 및 지하1층 주차장 통행로 높이는 2.7m이며, 지하 2~4층 주차장의 통행로 높이는 2.3m로 시공될 예정임.(주차공간 2.1m)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는 사업부지 동측에 위치하여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입점)자와 공유하여 사용함.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서 아파트용주차장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차단기를 통하여 동선을 통제함. 지하 1층(103동, 104동 하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이용이 제한됨.
- 쓰레기보관소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모델하우스 내 비치된 설계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와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차 충전설비, 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경관조명 등), 조형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단, 해당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 집하장은 지상 1층에 주거용/비주거용이 구분되어 설치되며, 동 출입구와 간섭되어 미관저해 및 환경권(악취 등)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분진, 시각적 간섭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운동시설, 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곳의 상부세대는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 진출입램프 상부 세대는 차량통행 및 출차표시등에 의한 소음과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단지 내 도로를 제외한 단지 내부로 차량이 출입할 수는 없으나, 소방차량 및 비상차량 등은 단지 내 구성된 비상차량동선을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구역은 지상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미관저해 및 인근세대 소음유입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저층부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물딩, 창틀 모양 등), 사인물, 경관조명, 동 출입구, 외부시설물(옥외계단, 난간 디테일, 천장, 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단지 우·오수는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인접대지 또는 단지과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장소인 공개공지, 주민공동시설, DA, 쓰레기 집하장, 근린생활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건물의 구조 및 지상/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공개공지는 단지 내부시설이나 관계 법령에 의거 단지 외부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개방 되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상 1, 2층에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확장형 주차비율 및 경형 주차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세대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거 주차구역 5대(지하4층), 비주거 주차구역 1대(지하1층)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저층부 외벽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 반영될 수 있음.
 - 고층부 세대에서는 항공장애 등에 의하여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옥외계단 포함), 패턴, 마감재, 사인물과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음.
 -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각 동의 일부세대는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리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에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각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지상층에 노출 설치되며, 자전거보관소 및 재활용품 보관소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각 동 최상층에 위치한 승강기 기계실과 인접한 세대 및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주민공동시설등 부속동의 상부에 위치한 일부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공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등 부속동의 상부에 위치한 일부세대는 외부인의 통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보안, 조망권 침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당 건물의 특성상 이삿짐의 이동은 승강기를 이용해야하며, 사전에 확인·수인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요 방법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함.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옥상정원 및 지상 3층 주민운동시설 옥상정원과 접하는 일부 세대는 외부인의 통행 및 인접 세대에 의한 사생활 침해, 보안 문제, 소음 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 1층에는 제연 환풍기의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계단실 제연설비 및 엘리베이터 홀 제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폐쇄장치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제연설비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와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급배기용)과 제연환풍기의 급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옥상에는 소방용 옥상수조, 소방용 펌프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하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저층부 일부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주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동 인근에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어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시설물(자동문,우편함,무인택배함) 등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심의기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입면, 조경 등은 특화 및 경관심의 등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아파트단지명 등), 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 법령의 범위 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P-D, A-D, PIT공간의 마감 미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지중공급 지역으로 전기 공급을 위한 P/S(Pad Switch)판넬이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동의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 공공보행자 통로는 입주민 외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폐쇄할 수 없으며, 관리유지비가 발생시,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함.
- 세대 현관에 스마트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이동통신용 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 공개공지는 입주민 뿐 아니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자전거보관소는 지상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1/102동의 경우 23층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며 옥상에는 헬리콥터를 통한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됨.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각 주동마다 다를 수 있음.
 - 본 단지의 기계실포함 저수조 등이 102동 하부에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해 상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101동, 104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2개소, 전파방향기준)와 지상 일부 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 중계설비(103동 지하1층, 지하3층 및 104동 지상12층 EPS/TPS실)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인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3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 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동일동의 계단실/승강기 설치 등에 의해 일부실의 조망, 일조,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세대 발코니 내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됨. 또한, 주거 형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바닥에는 하부 세대와 연결된 피난구가 교차로 설치되므로(일부 세대 제외), 층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윗층~아랫층의 생활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어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개방에 따른 인접 세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해야 함.
- 하향식 피난구실에 설치되는 창호는 관련 법규에 의거, 소방관 진입창으로 설치되었으며,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소방관 진입창이 2개소(하향식 피난구실, 침실)가 설치되어 채광 및 조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인허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창호 종류, 형태, 크기, 색상, 설치위치, 개폐가능여부, 프레임/유리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방충망 설치 제한 및 수동 개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발코니(실외기실 등)에 전열교환기가 노출 설치되며, 내부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천연자재(대리석 등)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vein: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vein:베인)이 다를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의 크기는 기계 설비 간섭 및 시공상의 여건으로 크기가 조정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반드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샷시 및 난간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경량벽체에는 액자, 선반 등 하중을 견디는 고정 가구 및 기계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에도 발코니 비확장 부위가 있으며, 이때 비확장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할 수 있으며, 추가 설치되는 경우 발코니 벽면 및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한 단차 발생 및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기 바람에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은 사양, 규격, 열림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음.
- 욕실 천장에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세대 내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 공사 시 ABS도어로 시공되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됨.
- 세대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갤러리창은 미관 및 실외기 성능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준, 검사 기준에 따라 천정 속으로 이동하는 가스배관의 천정 부근 및 빌트인 가스렌지의 가스호스 연결부 부근 등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기본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난방은 각 세대별 설치되는 개별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 방식으로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량에 따라 난방요금이 부과되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내 가구, 가전 및 도기의 모양, 재질,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설치여부는 계약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 바닥마감 레벨은 설계 치수로 실 시공 시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드레인은 시공 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오,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및 공용부의 전기분전반, 통신 단자함, 조명,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또는 매립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흡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 사용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 사물인터넷(IoT)서비스는 카카오와 제휴한 서비스로 성능개선 및 기술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연동은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입주시점부터 10년 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되며 또한 음성인식스피커는 임대보증금 미포함이며 입주시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무선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 현관중문은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본 공사 시 색상, 재질, 사양,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슬라이딩 도어 기능 및 설치 기준에 따라 도어와 벽마감 사이에 틈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음.
- 단지 일부 세대의 경우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해 세대측면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인한 채광 및 조망 간섭, 구조물의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실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소방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니 인지하시기 바람.
- 세대 환기설비인 전열교환기가 실외기실 상부에 노출로 설치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세대 환기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 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쿡탑설치 벽면에 설치되어 상부장 깊이가 줄어들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소화기 등이 설치되어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당 아파트에 계획된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MDF실 및 방재실 포함), 경비실 2개소, 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 GX, 작은도서관, 키즈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1개소(옥외), 골프연습장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사용검사 전 사용이 불가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차인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커뮤니티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의 관리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입주 후 운영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기본 마감과 기본 집기만 제공되고 기기류 및 일부 집기는 제외됨.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관리주체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구성, 창호사양 및 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경비실, 커뮤니티시설 등)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 시설물로서, 각각의 용도별 실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 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주차장은 아파트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 동선이 중복될 수 있음.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주택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 및 조경식재가 설치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쓰레기 집하장, 환기창, 실외기실 등 관련 시설이 동출입구 인근 설치되며 이로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공할 수 없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및 저압수전용 한전 지상변압기 설치로 인해 상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상가 미관을 위해 타 상가의 전기, 통신설비, 배관, 배선, 케이블 트레이등이 각실 천장으로 관통될 수 있음.

■ 특별수선충당금

- 본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용함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VII-0.243g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범죄예방건축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비주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성능평가(주택)

■ 홍보물

- 각종 인쇄물, 평면도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시기 바람.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임차인 모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명칭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측벽 또는 옥상조형물에 설치예정인 시공회사의 로고(BI)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므로,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분양가격 및 방법 등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여 시행함.

■ 본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중도금, 잔금의 각 납부일에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현장수납(직접납부)등 기타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납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의 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칠성 호반써밋 하이브파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받은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1-704-0060000호	일천칠백삼십구억일천삼백오십구만이천원정 (₩ 173,913,592,000)	보증서 발급일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위해 보증서가 발급된 세대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부트로 함

▣ 보증채무의 내용(약관 제1조)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약관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임대사업자·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임대사업자·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② 보증회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보증약관 제3조)

-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사전동의 없이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③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일 이후부터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④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부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공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⑥ 보증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사고의 정의(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② “보증사고일”이란 보증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임대차계약자)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사용검사전)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사업주체 변경의 동의】 임차인은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자금관리사인 (주)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금관리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은 임대사업자를 대리하여 본 공급계약의 공급금액을 수납 및 집행업무를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담당할 뿐 자금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매도인의 책임 기타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주)동도이엔씨	서한건설탄트(주)
감리금액	2,390,995,200	579,556,900	711,700,000

■ 친환경 주택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고기밀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펌프류, 모터, 변압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단위세대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 임대사업자 및 시공회사

구 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임대사업자	대구칠성피에프브이(주)	110111-7682176
시공회사	(주)호반건설	204711-0007384

■ 견본주택 홈페이지 : <http://hobansummit-cs.co.kr>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83, 칠성 호반써밋 하이브파크 견본주택

■ 분양 문의 : ☎ 1522-4994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